

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(안)

의 안 번 호	19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8. 24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, 유학생 역조 현상의 완화와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 및 신입생 부족난 해소를 위해 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제1차(2004.6.29)로 86억원 중 50%인 43억원을 출자 동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,

기숙사를 운영하는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동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시와 8개 대학이 86억원을 공동출자 (시 43, 8개 대학43)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.
- 나. 86억원 중 공사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비품구입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부족액중 시가 부담해야 할 130백만원을 추가 출자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- 다. 비용부담근거 : 외국인유학생기숙사추진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건립 사업비는 공사비, 설계비, 집기류 구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 50%, 8개 대학 50% 부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
- 나. 예산조치 : 130백만원(제2회 추경예산 반영예정)

참고 1 관련법규 및 협약서

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 (출자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공기업법】

제53조 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 [개정 92·12·8]

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 [개정 92·12·8, 2002.3.25.] [[시행일 2002.6.1.]]

【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추진 협약서】

제6조(출자및비용부담) ① 사업비는 기숙사 건립사업의 종료시점의 사업비 정산액에 의해 최종확정하되, 설계금액 등 소요추정에 따라 개산된 사업비출자금을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출자금 및 사업비용 용도로 분납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의 협약당사자 중 “갑”과 “을”, “병”, “정”, “무”, “기”, “경”, “신”, “임”이 부담하는 건립사업비는 공사비, 설계비와 집기류구입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총사업비(토지비제외)를 기준으로 “갑”이 50%를 “계”에게 출자하고, “을”, “병”, “정”, “무”, “기”, “경”, “신”, “임”이 공동으로 나머지 50%를 부담하여 “계”에게 납부한다.

“갑” : 대전광역시장

“을”, “병”, “정”, “무”, “기”, “경”, “신”, “임” : 8개 대학

“계” :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

참고 2 기숙사 비품구입 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수 량	금 액	비 고
가 구	1식	474,670	* 기숙사(226실) : 450,155,300원 ⇒ 1인당 100만원 정도임 ※ KAIST의 경우 1,200천원/인 * 공동사용 공간 : 24,514,700원
가 전	1식	87,740	* TV, 복사기, 프린터, 정수기 등
통신설비	1식	30,000	* 키폰교환기, 일반전화 230대 등
인터넷장비	1식	30,000	* 방화벽 및 스위치 설치
주방설비	1식	50,000	* 주방 기본설비
헬스용품	1식	7,960	* 러닝머신, 싸이클, 벨트마사지 등
사 인 물	1식	10,430	* 호수 사인, 실명사인, 건물사인 등
침 구 류	1식	9,200	* 침대카바(이불 및 베개는 개인구매)
계		700,000	

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

심사 보고서

2007년 9월 11일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
2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7일
3. 상정일자 :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4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9. 11)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송석두)

1. 제안이유

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, 유학생 역조현상의 완화와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 및 신입생 부족난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1차(2004. 6. 29)로 86억원 중 50%인 43억원을 출자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나,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동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8개 대학이 86억원을 공동출자(대전광역시 43, 8개 대학 43)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.
- 나. 86억원 중 공사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

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비품구입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중 대전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130백만원을 추가 출자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다. 비용부담근거 : 외국인유학생기숙사추진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건립사업비는 공사비, 설계비, 집기류 구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50%, 8개 대학 50% 부담

III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이희배)

○ 본 동의 안은

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가 8개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사업비를 출자하여,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내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중이나,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하려는 것임.

○ 본 동의 안 검토결과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으므로, 현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건립 중인 외국인유학생기숙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다만, 본 동의안은 지난 제168회 제1차 정례회시 공사 및 비품설계 부적정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보고, 운영계획서 작성 보고, 운영주체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약을 협의하여 제출토록 요구하며,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위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제출내용의 면밀한 검토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토론요지 : 생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